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첨단전략산업 인력에 대한 특별사증 발급〉

■ 고동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84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내용	3
2. 전문외국인력 현황	4
3. 개정안 검토	6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고동진의원 등 11인
2. 제 출 일: 2025. 1. 7.
3. 회 부 일: 2025. 1.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AI의 발전과 함께 AI 기술 인재 확보 국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되면서 세계는 AI 패권 확보 및 관련 우수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고,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 및 산업계에서는 해외의 고급 기술 전문가 영입 및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

하지만 국내의 인구 대비 해외전문인력 비중(0.09%)은 싱가포르(6.6%), 호주(0.3%), 일본(0.3%), EU(0.2%), 대만(0.2%) 등 해외 사례 대비 최저 수준이며, 국내의 해외인재 유입 매력도 순위('20년 36위 → '23년 43위) 또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영국, 호주,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은 인공지능기술과 첨단산업의 고급인재 유치를 위하여, 사증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인공지능기술 분야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첨단전략산업

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특별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를 완화 및 간소화(사증 심사기간 단축, 제출서류 간소화, 부모 등 동반입국 허용 범위 확대, 체류기간 확대 등)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 및 인공지능기술 분야의 해외 고급인재에게 특별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8조의2(사증 발급의 특례) ①</u> <u>법무부장관은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첨단전략산업 및 인공지능기술 분야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특별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u> <u>② 특별사증의 대상, 종류, 신청, 발급, 체류기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u>

2. 전문외국인력 현황

현행 외국인력에 대한 비자제도는, 취업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고용 계약 관계 등을 통해 입국·체류하는 취업자격과, 취업 자체가 체류 원인은 아니나 체류자격 외의 활동으로 취업이 가능한 비자인 거주(F-2)·재외동포(F-4)·영주(F-5)·결혼이민자(F-6)·유학생(D-2) 등이 있으며, 이에 더해 창업인력(D-10-2, D-8-4)도 외국인력에 포함될 수 있음.

2025년 6월 기준,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61만명 중 전문인력은 9.8만명(16.0%)으로, 취업자격 외국인의 대다수는 단순기능인력 51만명(83.4%)임.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업무 유형별·자격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업무유형·자격	인 원
전문인력	단기취업(C-4)	3,051
	교수(E-1)	1,822
	회화지도(E-2)	13,125
	연구(E-3)	3,187
	기술지도(E-4)	207
	전문직업(E-5)	218
	예술흥행(E-6)	4,602
	특정활동(E-7)	71,877
	소계	98,089
단순기능인력	계절근로(E-8)	60,563
	비전문취업(E-9)	341,453
	선원취업(E-10)	21,181
	방문취업(H-2)	89,225
	소계	512,422
기타	관광취업(H-1)	3,939
합계		614,450

※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25년 6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 계	거주 (F-2)	재외동포 (F-4)	영주 (F-5)	결혼이민 (F-6)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격 체류외국인	985,118	64,715	554,895	214,036	151,472

※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25년 6월)

전문외국인력의 정의와 관련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전문외국인력을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으로 규정하면서 별도의 구체적인 의미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어 법적·제도적으로 확립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움.¹⁾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인력을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 개발 및 개선하며, 고도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료활동과 각급 학교 학생을 지도하고 사업, 법률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예술적인 창작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으로 정의하고,²⁾ 숙련인력을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을 갖춘 인력’으로 정의³⁾하였음.⁴⁾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6조(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비자 예시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중 전문인력(E-7-1) 및 준전문인력(E-7-2)

3) 비자 예시 : 특정활동(E-7) 중 일반기능인력(E-7-3) 및 숙련기능인력(E-7-4)

4) 국회예산정책처, 「전문·숙련 외국인력 유치 정책 및 사업 평가」, 2024. 7., p.5.

3. 개정안 검토

최근 인공지능(AI)과 자동화 등 신기술 발전과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로 인적자원 확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중국, EU, 일본 등은 비자제도 우대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해외 고급인재 유치에 위해 노력하고 있음.⁵⁾

이에 개정안은 우리나라도 인공지능(AI),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외국 전문인력 유치를 촉진하고 정주형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특별사증” 발급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

다만, 현재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바,⁶⁾

5)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 「주요국의 외국 전문인력 유치 동향과 한국의 과제」(2022. 12. 8.)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외국인의 신규 취업비자 발급 중단조치를 해제하고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요건을 완화*하였으며, 2022년 1월 미국 대학 과학기술분야 졸업 후 취업프로그램(OPT)에 22개 전공분야를 추가**하였음(*2022년 말까지 한시적 대면 인터뷰 면제 등, ** 바이오, 에너지, 환경, 지질, 해양, 클라우드 컴퓨팅, 경제학, 재정분석, 데이터 분석 등)

(중국) 2008년부터 [친인계획]을 통해 첨단기술 연구자, 창업자 등 해외 고급인력 유치정책을 펴온 중국은 2019년 [고급외국인 전문가 유치계획]을 통해 전략 핵심분야 글로벌 인재, 청년과학자 등 외국인 인재 유치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또한 2018년 노벨상 수상자, 세계 일류대학 교수, 학위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최장 10년까지 유효하며 심사와 발급기간을 대폭 단축한 [해외 인재비자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음.

(일본) 2013년부터 일본재흥전략(일명 아베노믹스) 하에 고급인재 인정요건 완화(2013년 12월), 고급인재 재류기간 무제한 자격 신설(2015년 4월), 일본 거주 외국인 연구·경영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요건 완화 [고도외국인재 그린카드제도 도입(2017년 1월, 종전 5년 → 1년)] 등 외국 전문인력 유치정책을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일본의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은 2012년 18.5%에서 2021년 22.8%로 4.3%p 증가하였음.

(대만) 2021년 해외 과학기술·엔지니어링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문가에 대해 임금소득이 300만 대만 달러 이상(원화 1억 3천만원)인 경우 초과분의 절반은 과세범위 제외하는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비자 등 거주 관련규정을 완화하였음.

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에 필요한 제도 등과 관련한 사항이 일정 부분 포함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2023년 12월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는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우수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활성화,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첨단 글로벌 인재 확보, 첨단기술 분야 비자제도 개선 등의 세부 과제를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⁷⁾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년~’27년) 주요 추진 과제]

구 분	주요 추진 과제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 법무부, 47p.~53p.

역발전 촉진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 성장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 사회 구현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보편적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여성·아동 등 취약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국제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의무 이행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기반 확충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
	국제사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이민 협력 강화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일부)]

(우수·전문 인력 유치 확대 및 육성)

- ① **【국내채류】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활성화(법무부)**
 - 우수인재가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 및 영주·귀화 유도를 위한 제도 마련
 - 이공계 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가 총장 추천서를 받은 경우 취업 조건 등 없이 거주를 허용하고, 점수제 요건 충족 및 연구실적 우수자에게는 영주·귀화 허가
 - ※ 인구감소에 유기적 대응 및 지역 균형 발전 등 고려, 지방거주·근무 가점 부여
- ② **【해외채류】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과기부, 법무부)**
 - 우수 해외 연구자(반도체·AI 등 전략기술 분야)를 유치하여 국가 연구경쟁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박사급 연구자 유치(BrainPool*, 1~3년), 신산업 분야 정상급 연구자 장기 유치(BrainPool*, 최대 10년)
 - * 해외 우수 과학자를 국내 연구기관에 초빙하여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연구환경 국제화, 신성장동력 확보, 신진 연구인력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해외 우

수과학자 유치사업

- 외국인 우수 연구자 대상 사이언스 카드* 발급 및 우대제도 확대를 통해 전략적 인 우수인재 유치 활성화 추진

* 외국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국내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급하는 추천서

※ 사이언스 카드 발급 시 장기 체류기간 부여, 가족체류 및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 등

③ **[글로벌 최상위 인재] 첨단산업 글로벌 인재 확보(법무부,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 각 분야별(산업계, 벤처·창업계, 연구계) 집중 유치 대상(Top-Tier급)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요건을 최소 기준으로 단일화하여 활발한 취·창업, 학업을 전면 허용
-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외국인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첨단산업 우수인재(유학생 포함)를 출입국우대 카드 발급 대상에 추가하고, 동반가족에게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

④ **[글로벌 인재] 첨단기술 분야 비자제도 개선(법무부)**

- 고소득자 및 첨단기술* 분야 종사 예정자를 대상으로 단순노무 등 일부 제한되는 직종 외에는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
-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 대상 첨단기술 분야 인턴비자 신설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기술(반도체, 바이오,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등)

⑤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SW 전문인력 취업 연계(중기부, 법무부, 교육부)**

- 개도국*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SW분야 교육과정을 제공 후 국내 스타트업으로 취업 연계 추진

* 우수인력 분포, 불법체류율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 국가 선정

※ 자료 : 법무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자료 재구성

또한, 법무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자 지자체 수요에 기반한 “지역특화형 비자”,⁸⁾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비자”⁹⁾ 등 기존의 체류허가 유형과 차별화된 특별비자를 도입하여 해외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개정안과 관련하여, 2025년 3월 개최된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사증발급

8) 「법무부, 지자체 수요 기반의 ‘지역특화형 비자’시범 실시」(2022.7.25., 법무부 보도자료)

9) 이외에도 법무부는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기존의 기술창업 비자와는 차별화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도입을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발표한 바 있음(2024.11.6., 법무부 보도자료)

절차 간소화, 체류자격 부여기준 및 영주권 취득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탑티어(Top-tier)비자” 신규 도입을 통해 글로벌 최우수 인적자원 확보 노력을 발표한 바 있음.¹⁰⁾

【 탑티어(Top-Tier) 비자 주요내용 】

대상, 심사기준 및 절차
○ (대상) 국내 첨단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수석 엔지니어급 또는 중견 연구자 이상의 최우수인재로서 관계부처가 검증하고 추천한 사람 ○ (심사기준 및 절차)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인재를 추천하면, 법무부장관이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부여 ① 첨단분야 취업 확정 여부 ② 세계 100위 이내 대학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력 소지 가.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8년 이상의 첨단분야 관련 근무경력 나. 정부 주도 연구소, 세계 100위 이내 대학의 연구소 또는 세계 500대 기업의 부설 연구소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관련 연구경력 ④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또는 한국어 능력시험(TOPIK) 1급 취득 ○ (체류자격) 취업활동이 자유로운 ‘최우수인재 거주(F-2-7T)’ 자격 부여 ○ (체류기간) 체류기간 최대 5년 부여
사증·체류 혜택
○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신속한 비자발급을 위해 최우수인재 및 동반가족이 재외공관이나 출입국관서 방문 없이 전자사증(홈페이지로 신청하여 프린트하는 방식) 발급 허용 ○ (체류자격 부여 기준 완화) 기존에 우수인재가 거주(F-2)를 받으려면 최소 1년 이상의 국내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나, 탑티어 비자의 경우 국내 거주 요건 없이 즉시 체류 자격을 부여 ○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 기존에는 우수인재가 영주권 취득을 위해 국내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였으나, 탑티어 비자의 경우 3년만 거주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

※자료: 법무부

한편, 사증 특례를 규율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첨단전략산업 및 인공지능기술 분야에 대한 사증 특례를 「출입국관리법」에 규정하고

10)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글로벌 최우수 인재유치로 첨단산업 지원한다」(2025.03.05.,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있으나, 첨단전략산업의 정의 및 대상 등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하위법령을 통해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4개 분야 15개 산업으로 구체화하여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11)12)

사증발급 특례가 필요한 분야 및 대상 등은 「출입국관리법」이 아닌 개별법령을 통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증·추천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등 입법례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입국관리법」에서 특별사증을 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5호)」(일부) 】

○ 4개 분야(산업) : ① 반도체(4개) ② 이차전지(4개) ③ 디스플레이(5개) ④ 바이오(2개)	
○ 예시(① 반도체(4개))	
연번	산업명 및 세부 설명
1	첨단 메모리반도체 산업 : 16나노 이하급 D램 및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2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업 : 픽셀 0.8 μ m 이하 이미지센서,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을 위한 OLED용 DDI(Display Driver IC), 14nm 이하급 반도체 등 첨단 시스템반도체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필요한 IP·설계·디자인서비스·SW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3	첨단 패키징 산업 : FO-WLP, FO-PLP, FO-PoP, SiP 등의 방식으로 반도체 패키지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1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이라 한다)이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개정안에 대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첨단전략산업’과 법체계상 중복·혼동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함.

4	연관산업(자동차, 통신, 사물인터넷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반도체 산업 : 실리콘·화합물 기반의 전력반도체(Discrete, Power IC, Module 등), 이동수단용 반도체(MCU, ECU, Smart Sensor 등)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필요한 IP·설계·디자인서비스·SW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	---

【 「출입국관리법」 특례를 타 법률에서 규정한 입법례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9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u>전략기술의 개발사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기준·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u> * 관계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30조(우수 해외인재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u>첨단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u> ② 법무부장관은 첨단산업과 관련된 우수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이민 절차의 완화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관계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u>거점지구의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u> * 관계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u>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u> * 관계 기관 :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 의 처
02)6788-5057